

第14回 大邱直轄市達西區議會(臨時會)

議會本會議會議錄

第 2號 (附録)

大邱直轄市達西區議會事務課

目 次

1. 大邱直轄市達西區92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承認要請案審查報告書.....	32面
2. 大邱直轄市達西區宗教團體醫療業에對한區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制定案審查報告書.....	37面
3. 大邱直轄市達西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審查報告書.....	40面
4. 大邱直轄市達西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處理에關한條例制定案審查報告書.....	46面

大邱直轄市達西區92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承認要請(案)審查報告書

1992. 11. 9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2. 9. 7
- 다. 회부일자 : 92. 9. 9
- 라. 상정일자 : 92. 9. 18
- 마. 재상정일자 : 92. 11. 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에 의하여 주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한 상인동 944번지 유지등 5필지는 현재 개발중인 상인 택지 개발지구에 편입된 지역으로서
- 대구도시개발공사로부터 92년 7월 21일 매수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하게 됨
-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한 재산 현황은 총 5필지에 7,359평방미터 임
- 상인동 944번지의 유지 3필지 7,281평방미터는 상인택지 지구가 개발되기전 월촌지로써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던 공유재산이며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58조 7항에 의하여 용도 폐지 (92. 3. 13)되어 92. 7. 29 재무과로 이관된 잡종 재산임.

나. 주요골자

- 구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요청한 5필지 7,359평방미터는 상인택지 조성이 완료되기전에 도시개발 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므로써 향후 분양시 소유권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 택지 개발지구의 재산을 조기에 매각하여 구세입 총당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구직할시달서구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은 제출자료를 검토한바 상인동 944번지의 3필지는 88. 5. 9 대구직할시로부터 승계받아 90. 9. 13 달서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으로 90. 10. 27 상인지구 도시계획사업이 착공되어 90. 12. 31 토지 시가 감정이 되었으며.
- 90. 12. 6부터 91. 11. 11까지(약11개월간)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 92. 3. 13농지개발시설(저수지) 용도 폐지. 92. 7. 21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지구 편입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요구. 92. 7. 29 저수지용도 폐지잡종재산을 지역 경제과에서 (본 사업 착공부터 약1년 후에)재무과로 구유재산을 인수인계 되었으며 재무과에

서도 인수인계 받은 재산중에서 상인 887번지 유지 130평방미터를 관리계획 승인에서 누락시키는 등 공유재산 관리가 소홀한 감이 있음.

- 그리고 택지 개발 촉진법 제26조 ①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택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이외의 목적으로는 이를 처분 할 수 없다.

②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소유의 잡종재산을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이를 이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 도시계획법 제60조 ① 개발예정지역안의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양도에 있어서의 양도가격의 지급기간,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8조 ① 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은 그 재산을 취득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 당해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2. 다른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와 교환

- 도시계획법 제87조 제2항 재개발 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 함은 하지는 없으나 관계공무원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감이 있으나 이미 택지 개발 사업이 시행되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감정 가격을 재평가조건으로 가결함이 좋다고 생각됨.

4. 토론요지

배영철 위원 : 도시개발계획 시행전 국유재산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재 개발사업

이 마무리 단계이므로 환지 계획은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이번 재산 매각 계획은 승인하되 향후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손성태 위원 : 담당 공무원의 관리 소홀에 주의를 촉구하고 금번 매각에 따른 확보예산은
차기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재투자하여 주민 복지 시설을 조기 확보토록 할
것.

이재영 위원 : 구유재산 확보는 택지 확보가 가장 유리하고 또한 재원 확충이 보장되므로
타당하다고 봄. 앞으로는 복지시설 예정지 매각대금은 반드시 복지시설 예
정지를 확보토록 하는데 재투자토록 할 것이며 예산편성 지침에만 얽매이지
말고 복지시설 확충을 자체 구예산만으로 시행토록 촉구
향후 도시계획시는 우리구 관할 개발 계획에는 반드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협조 및 자문을 득한 후 수립 시행하기 바람.

최학득 위원 : 본 안건은 원안가결하되 택지 확보 재투자 계획은 차후 논의토록 제의함.

류광현 위원 : 원안가결하되 향후 도시개발예정지에는 반드시 주민복지시설을 조기에 확보
토록 요구함.

5. 승인요지

본 안건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감정가격을
재평가하는 조건으로 의결하고 아울러 확보 예산은 차후 예상되는 복지시설에 재투자토록
건의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찬 성 : 우승기 위원외 7명

반 대 : 없음

7. 첨부 :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1부.